

후원회(지정) · (지정철회)서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문서번호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명 칭(약 칭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사무소의 소재지		전 화 번 호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대표자	성 명	(한자:)	주 민 등 록 번 호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주 소		전 화 번 호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(지정) · (지정철회)연월일		년 월 일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「정치자금법」 제6조·제7조제3항 및 「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」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후원회를 (지정) · (지정철회)합니다. 년 월 일 <table><tbody><tr><td>—○○당</td><td>대표자</td><td>☐직인</td><td>—</td></tr><tr><td>—○○당(가칭)창당준비위원회</td><td>대표자</td><td>☐직인</td><td>—</td></tr><tr><td>—국회의원</td><td>○○○</td><td>(인)</td><td>—</td></tr><tr><td>—○○시·도의회의원</td><td>○○○</td><td>(인)</td><td>—</td></tr><tr><td>—○○구·시·군의회의원</td><td>○○○</td><td>(인)</td><td>—</td></tr><tr><td>—대통령(예비후보자) · (후보자)</td><td>○○○</td><td>(인)</td><td>—</td></tr><tr><td>—○○당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</td><td>○○○</td><td>(인)</td><td>—</td></tr><tr><td>—○○당대표경선후보자</td><td>○○○</td><td>(인)</td><td>—</td></tr><tr><td>—○○당○○○경선후보자</td><td>○○○</td><td>(인)</td><td>—</td></tr><tr><td>—○○시·도지사(예비후보자) · (후보자)</td><td>○○○</td><td>(인)</td><td>—</td></tr><tr><td>—○○자치구·시·군의장(예비후보자) · (후보자)</td><td>○○○</td><td>(인)</td><td>—</td></tr><tr><td>—○○선거구국회의원(예비후보자) · (후보자)</td><td>○○○</td><td>(인)</td><td>—</td></tr><tr><td>—○○시·도○○선거구시·도의회의원(예비후보자) · (후보자)</td><td>○○○</td><td>(인)</td><td>—</td></tr><tr><td>—○○구·시·군○○선거구구·시·군의회의원(예비후보자) · (후보자)</td><td>○○○</td><td>(인)</td><td>—</td></tr></tbody></table>					—○○당	대표자	☐ 직인	—	—○○당(가칭)창당준비위원회	대표자	☐ 직인	—	—국회의원	○○○	(인)	—	—○○시·도의회의원	○○○	(인)	—	—○○구·시·군의회의원	○○○	(인)	—	—대통령(예비후보자) · (후보자)	○○○	(인)	—	—○○당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	○○○	(인)	—	—○○당대표경선후보자	○○○	(인)	—	—○○당○○○경선후보자	○○○	(인)	—	—○○시·도지사(예비후보자) · (후보자)	○○○	(인)	—	—○○자치구·시·군의장(예비후보자) · (후보자)	○○○	(인)	—	—○○선거구국회의원(예비후보자) · (후보자)	○○○	(인)	—	—○○시·도○○선거구시·도의회의원(예비후보자) · (후보자)	○○○	(인)	—	—○○구·시·군○○선거구구·시·군의회의원(예비후보자) · (후보자)	○○○	(인)	—
—○○당	대표자	☐ 직인	—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—○○당(가칭)창당준비위원회	대표자	☐ 직인	—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—국회의원	○○○	(인)	—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—○○시·도의회의원	○○○	(인)	—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—○○구·시·군의회의원	○○○	(인)	—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—대통령(예비후보자) · (후보자)	○○○	(인)	—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—○○당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	○○○	(인)	—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—○○당대표경선후보자	○○○	(인)	—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—○○당○○○경선후보자	○○○	(인)	—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—○○시·도지사(예비후보자) · (후보자)	○○○	(인)	—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—○○자치구·시·군의장(예비후보자) · (후보자)	○○○	(인)	—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—○○선거구국회의원(예비후보자) · (후보자)	○○○	(인)	—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—○○시·도○○선거구시·도의회의원(예비후보자) · (후보자)	○○○	(인)	—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—○○구·시·군○○선거구구·시·군의회의원(예비후보자) · (후보자)	○○○	(인)	—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○○○후원회 귀중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주: 후원회 명칭에 약칭을 사용하는 경우 "명칭(약칭)"란에는 「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」 제7조에 따른 후원회의 명칭과 약칭을 함께 기재합니다.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